

(1) 초기점검 시 추가과업 산정 기준 근거

○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047호 2020.01.23.)

제 47조 ④	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(초기점검)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, 점검·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계상 하여야 한다.
제 47조 ⑤	별표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은 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’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제 47조 ⑧	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’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’ 별표 26을 적용한다.

○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58호 2020.06.17)

근거	선택과업 구분	대가 기준	비고
[별표26] 선택과업 비용 기준	9. 비파괴재하시험 (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)	기준시설물(2차선, 단순교)시 (고급기술자 :외업14인/내업7인)	콘크리트교/강교, 단순/연속, 차선수에 따른 조정비 적용
	10. 구조(지반,수리)해석	각시설물별, 구조형식별 필요한 소용인원수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	
	외관조사망도 작성 (시특법상 대가 기준 없음)	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 47조 ⑧에 따라 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’을 적용	실비정액가산방식 도로공사 : 정기안전점검 수준 철도공단 : 실건적이 적용